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460번
- 발 의 자 : 김소영 외 1명(찬성자 17명)
- 발 의 일 : 2021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내용 및 정책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반영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반영함.
- 나.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반영함.
- 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위탁)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반영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6. 4. ~ 6. 11.)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내용 및 정책 일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반영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 조문 체계               | 주요 내용   |
|---------------------|---|
|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li> <li>- 실태조사 결과 제5조 기본계획 및 제6조 시행계획에 반영</li> <li>- 실태조사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li> </ul>  |
| 제20조(정보격차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티터링 및 기술 상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추가 규정</li> <li>- 정보격차 해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접근성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에서 지원</li> <li>-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li> </ul> |
| 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포한 날부터 시행</li> </ul>  |

- 입법취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바, 상위법령에 따른 기본 조례 성격을 가진 본 조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동 조례는 2020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28)이 제출되어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0.4.29.)에 상정되었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조례를 부칙을 통해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01회

정례회에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되었음.

- 다만,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를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 및 시민소통기획관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업무 중복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현재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업무는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업무임. 이는 2019년 8월 시정안내·시민소통 창구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정보 제공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시 홈페이지 운영 업무를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하였음.

**시 홈페이지 운영 업무 이관 계획**

---

시 홈페이지 운영 업무를 스마트도시정책관(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시민소통기획관(뉴

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 시정안내·시민소통 창구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시정정보 제공 및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홈페이지팀 현황

### ○ 주요업무

- 서울시 홈페이지 29개(대표2, 분야8, 시책8, 사업소7 등) 운영 총괄
- 홈페이지 운영 환경 통합 및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정보접근성 및 호환성 관리, 홈페이지 운영 실태 평가
-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 통합검색,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운영
- 웹사이트 및 공공앱 관리(구축, 오픈 시 심사 등)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등

※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사업예산 : 2,264백만원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1,609백만원)+서울시 웹사이트 운영관리(655백만원)

## II

## 업무조정 필요성

### 시 대표 공식 매체로서 전략적 시정 안내 및 시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시 대표 홈페이지는 일평균 4만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영향력 있는 공식 매체임에도, 현 운영조직의 특성상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나열식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중심으로 운영
-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 소개 및 시정 핵심사업 표출로 대시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통창구 역할 강화

### 시정홍보 사이트와 효과적 연계 운영으로 시민 편의 제고

- 시민들이 많이 찾는 홈페이지간 통일성 없는 레이아웃과 콘텐츠 중복으로 시정 이미지 혼선 및 정보 습득의 불편 야기
- 시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방대한 서울 관련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 사이트와 유기적인 연계 필요
- 시 대표(국문),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실국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 시정정보 제공

### 최신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 콘텐츠 적용, 시정 공감대 확산

- 소셜미디어 확산, 온라인 매체 다변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쇼트비디오, 라이브영상 등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영향력 증대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유튜브, 온라인방송, 블로그 등 시 공식 온라인 홍보 채널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 공감대 확산

### Ⅲ

## 업무이관 계획

### □ 추진방향

- ‘온라인’ 시정정보 제공 및 시민소통 업무에 특화된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
- ‘시 대표 홈페이지’와 ‘내 손안에 서울’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보완, 일관되고 통일된 시정 메시지 전달, 시민 편의 제고 및 소통 활성화

- 더불어, 동 조례의 개정이후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나,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면, 동 조례는 2013년 이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 개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와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우창윤 의원 발의, 2015년 11월 9일)를 제정('16.3.24.)·시행('16.4.14.)하였고,
    -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명은 ‘웹접근성’이란 용어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까지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정보접근성’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2019년 7월 18일 일부개정·시행되었음.
    - ※ 또한, 현재 서울시의 선도적 조례 제정을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1개임(광역자치단체 7개, 기초자치단체 14개).

| 연번 | 제정일          |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
|----|--------------|------------------------------|
| 1  | 2014년 2월 12일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2  | 2016년 3월 24일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3  | 2016년 5월 17일 |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4  | 2016년 7월 28일 |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               |                                  |
|----|---------------|----------------------------------|
| 5  | 2016년 10월 13일 |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6  | 2016년 10월 31일 | 김포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7  | 2016년 12월 14일 |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8  | 2016년 12월 21일 |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9  | 2017년 7월 13일  |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10 | 2017년 9월 20일  |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
| 11 | 2017년 9월 28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12 | 2018년 9월 28일  |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13 | 2018년 12월 6일  |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14 | 2018년 12월 31일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15 | 2019년 6월 14일  |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16 | 2019년 7월 4일   |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17 | 2019년 10월 28일 |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18 | 2020년 4월 8일   |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 19 | 2020년 5월 28일  |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20 | 2020년 11월 13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21 | 2021년 2월 24일  |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1년 4월 15일 최종방문)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디지털 사회로 인해 승차권 예매, 주차요금 정산, 음식 주문 등 키오스크(Kiosk)<sup>1)</sup>가 보편화되면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sup>2)</sup>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기본조례에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현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정보

1)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를 말함.

2) 비대면, 무인화가 상용화되어가는 현실에서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기존 전통적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동시에, 일반 이용자간에도 필요도와 활용능력, 관심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등 그 양상도 복잡해질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보격차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현상 및 사회분열의 우려를 수반한다고 지적하였음(김나정,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이슈와 논점』 제177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12. 참조).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통해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의미를 살리는 데 보다 부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舊,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작동부가 위치한 키오스크 비율은 25.6%,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화면이 위치한 키오스크 비율은 36.4%,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게 시각정보를 음성정보화 함께 제공하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7.8%에 그치고 있음(조승래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노인 위한 키오스크 예산 쥐꼬리”, 2020.10.18.,자).

※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10명을 대상으로 버스터미널, 패스트푸드점, 은행의 키오스크 이용 모습을 관찰한 결과, 버스터미널에서 70세 이상 고령소비자 일부(5명 중 3명)는 발권 진행하지 못했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소비자 5명 모두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키오스크를 처음 이용하는 고령소비자는 용어 이해,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고령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키오스크 등의 비대면 거래 교육 필요”, 2020년 9월 8일자 참조).

| 모든 작동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작이 가능한가 | 디스플레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볼 수 있는 곳에 있는가 | 시각적 콘텐츠는 동등한 음성정보와 함께 제공되는가 |
|-----------------------------|---------------------------------|-----------------------------|
| <p>준수 25.6<br/>미준수 74.4</p> | <p>준수 36.4<br/>미준수 63.6</p>     | <p>준수 27.8<br/>미준수 72.2</p> |

※ 출처: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승래 의원실 재구성

※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로 매우 낮았고, 서울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소유 비율은 66.9%이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1위 문자·카카오톡(96.6%), 2위 사진·동영상(80.1%), 3위 인터넷 검색(67.5%), 4위 기본앱 이용(60.9%), 5위 유튜브(YouTube) 보기(57.3%) 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난이도가 높은 앱 설치(18.7%)나 인터넷뱅킹(16.3%), 음식 주문(4.5%) 등은 매우 낮은 사용가능 수준이었음(서울복지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f1004/222167035241>, 2021년 4월 15일 최종방문)

- 다만, 현재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등은 시민소통기획관이 담당하고, 정보격차 해소 등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담당하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업무를 통일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 이관 및 조정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세부내용 검토

### 1)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조사 등(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폐지를 예정하고, 동 조례 제5조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다만, 동 조례에서 ‘정보접근성’은 법에서는 정의하지 않는 용어로 개정 당시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sup>3)</sup>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까지 포함하는 ‘정보접근성’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반영하여 개정(2019.7.18. 일부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되었으나 동 개정조례안의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용어를 법에서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이라고 하고 있음), 정의 규정은

3)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5369호, 일부개정 2018.2.21., 시행 2019.2.22.)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정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7344호, 2020.6.9. 전부개정, 2020.12.10.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생략)</p> <p>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 <p>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 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2) 정보통신접근성 사업추진 및 위탁 등(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폐지를 예정하고, 동 조례 제6조 추진사업 중 일부와 제10조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다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의 조문 제목은 ‘정보격차 해소’이나 안 제20조제2항제3호와 제4호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사항’, 제20조제3항은 ‘위탁과 재정적 지원’, 제20조제4항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의 제목을 ‘정보격차 해소’에서 ‘정보격차 해소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함(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년 6월, 314면 참조).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생략)<br>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 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현행과 같음)<br>② ----- |

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신설>

3.·4. (생략)

<신설>

<신설>

-----.

1.·2. (현행과 같음)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     |       |     |
|------|-----|-------|-----|
| 전문위원 | 김태한 | 입법조사관 | 최문숙 |
|------|-----|-------|-----|